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4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봉양순, 강동길, 곽향기,  
김 경, 김경훈, 김성준,  
김인제, 김재진, 남궁역,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춘선, 성흠제,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민옥,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은림, 임규호,  
정준호, 최기찬, 한 신  
의원(27명)

## 1. 제안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산림문화·휴양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산림문화·휴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란 시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은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휴양 자원 현황
3. 산림문화·휴양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4. 산림문화·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 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휴양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

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제9조(자연휴양림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시장은 시민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자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6조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제7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및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산림문화·휴양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6조	사방시설 조성	12,345,916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808,559
	산림서비스 증진(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46,800
제7조	산지사면 정비	8,550,940
제10조	서울형 치유의 숲길 확대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보수 등)	394,408 (307,308)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 인부임)	392,503 (119,103)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5조(실태조사)

#### 나. 전제

- 제5조(실태조사)는 2024년 서울시 예산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5년(2025년~2029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합계) ≍ 176,410천원(연평균 35,28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5조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소계(b)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 총 비용(b-a)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 계 분 석 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실태조사)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76,410천원(연평균 35,282천원)  
 = 35,282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5조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소계(b)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 총 비용(b-a)		35,282	35,282	35,282	35,282	35,282	176,410

※ 비용은 2024년 서울시 예산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사업 비용을 준용

[붙임 1] 2024년 사방시설 조성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 치 : 관악산, 북악산 등 산지사면
- 사업기간 : 2024.1.~5.
- 사업규모
  - 산지사방 40ha, 계류보전 25km, 사방댐 8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3개소
- 사업내용 :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총사업비 : 12,345백만원

[붙임 2] 2024년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대공원 일대
- 규모
  - 산림육장 : 산책로 7km, 데크쉼터 6개소, 정자 8동, 기타 편익시설, 약수터 1개소(서울랜드 1개소)
  - 임야관리 : 임야 743ha
  - 캠핑장 : 시설면적 27,000㎡ 4야영장 텐트150동, 화장실2, 샤워장1, 음수대9, 방문자센터, 매점, 산책로 등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내용
  - 산림육장 : 등산로(목계단, 데크) 정비, 노후시설(편의시설, 휴게시설) 정비, 배수 및 안내 체계 개선
  - 임야관리 : 병해충방제작업,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숲가꾸기
  - 캠핑장 관리 : 사용수익허가 및 시설관리(안전시설, 법적사항 준수)
- 총사업비 : 808,559천원

[붙임 3] 2024년 산림서비스 증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운영장소 : 식물원
- 운영기간 : 2024. 1. ~ 12.
- 운영기관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 운영방법 : 공고를 통해 수목원코디네이터 채용
- 운영내용
  - 수목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수목원 관리 및 지원 업무
  - 식물 유전자원 수집·증식·보전 및 공립 수목원 지정 관련 업무 처리 등

[붙임 4] 2024년 산지사면 정비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5.
- 위 치 : 관악산, 북악산 등 산지사면
- 규 모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사면보강 등
- 사업내용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사면보강, 산사태대응팀 운영,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사면안정성 검토 등
- 총사업비 : 8,551백만

[붙임 5] 2024년 서울형 치유의 숲길 확대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기관 : 서울형 치유의 숲길 운영 13개소(관리청 11개소)
- 사업내용 :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자연 체험과 접목된 명상, 요가 등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붙임 6]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지대장 업무 관할 자치구 및 농지면적 50ha이상 4개 자치구(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사업기간 : 2024.1월 ~ 12월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경비 및 행정비 지원